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만이 해법이다.

최근 남한 내에서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범 아시아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4. 형사권력의 남용 ; 감옥 수용자의 처우, 고문·가혹행위 등의 문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해방이래 줄곧 '사법일꾼'들의 인권침해를 경고해 왔으며,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이 될 것을 강조해 왔다. 이는 50여 년에 걸친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정에서도 '권력'을 무기로 한 인권침해는 근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수사·구금기관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와 고문 등의 행위는 체제의 성격과 무관하게 어느 사회에서나 상존하는 인권문제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사회만의 고유한 인권문제가 아니며, 북한 '체제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도 아니다.

다만, 북한 사회에서 형사처벌의 대상행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는지, 혹은 형사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등의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으나, 이는 북한만을 특별히 지정해 고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할 문제 즉,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다.

5.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북한의 자유권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다. 이에 대해선, 아직도 실제적 진실이 불분명하다. 탈북자들 스스로도 "정치범수용소등에 대한 실상이 과장, 왜곡된 채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일국 내에 형사처벌 대상자들을 교화하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며, 다만 '감옥에서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선 북한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공히 반성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개처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는 제도로서 즉각 사라져야 하지만, 사형제도를 온존시키는 나라들은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자격이 없다. 비공개처형제도를 더 인권적이라 말할 수는 없으며, 자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형제도부터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6. 신분차별

북한에 관한 이른바 '인권보고서'에는 '출신성분에 따른 직업선택 및 교육 차별의 문제'가 단골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지 '형식적 기회평등'의 관점이나 '시장의 원리'에 의거해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 일방의 시각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체제의 '노동·교육·인적자원 배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²²⁾. 이를테면, '완전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노동시스템에 있어, 일정한 인적자원을 특정한 노동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배치가 철저히 '출신성분'에 기반하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차별이자 억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적 부(富)에 따라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교육권의 보장이 어느 체제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비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7. 감시와 통제

정부당국이 주민을 관리통제하는 것은 현존 어느 체제에나 존재하는 문제이며,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권수준'의 열위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첨단 정보집적 및 감시통제시스템을 가진 사회와 낙후된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에 의한 관리통제에 치중하는 사회 가운데 후자를 더 감시사회라고 주장할 수는

22) 이 역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문제다.

없는 노릇이다. 길거리와 노동현장의 CCTV설치가 일반화되는 사회, 모든 개인정보가 중앙통신망으로 집중되는 사회가 봉건적 감시망에 의존하는 사회를 향해 '반인권성' 운운하는 것은 똥물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북한 당국의 과도한 통제로서 비판받아 온 문제 가운데 하나가 통행증 제도다. 통행증으로 인해 일반 인민들의 거주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뿐더러, 경제활동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²³⁾ 그러나 이 제도가 북한 인민의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본질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행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정부의 관리통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또 다른 제도가 통행증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90년대 후반의 위기를 겪으며 북한에서는 사실상 통행증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실정이다.²⁴⁾ 최근 탈북자들이 남한 당국을 상대로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일은 아이러니한 일이다.²⁵⁾

남한의 경우, 대표적인 주민관리제도는 주민등록제도이다. 지문날인을 동반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은행의 이용과 개인사업의 시행 등 기본적 경제활동을 영유할 수 없다. 결국 북이든, 남이든, 정부당국의 과도한 감시와 통제를 제거하고 인민의 자율적 행동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공통의 과제다.

8. 경제활동의 자유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해, 북한 인민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행증 제도의 폐지, 개인영농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사적 경제활동의 보장을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²⁶⁾. 그러나 이미 북한정부는 개인적 장사와 영농,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경제운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인민의 이해와 요구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전면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시킬 것인가(사회주의 경제원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는 곧 '체제전환'의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압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민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자결권의 영역)라는 점을 1절에서 언급했다.

경제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의 배급체계 붕괴를 이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면, 오히려 배급체계의 회복과 합리화를 위한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대외적 지원이 선결과제일 수 있다.

5절. 결론

1. 북한 인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권의 보장은 해당 인민의 자결권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식민지 국가들의 경험을 돌아보자). 즉, 주권이 보장되고 공동체 붕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해당 사회 내에서 인민들의 자주적 역량에 의한 인권신장은 가능하다. 제국주의 세력의 주도아래 북한 사회의 내부적 변화를 인위적으로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북한사회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3) 노옥재(좋은벗들), '북한인민의 권리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언', 2003. 12

24) 노옥재(좋은벗들), '북한인민의 권리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언', 2003. 12

25) "탈북자동지회와 평화통일을 위한 탈북인연합회 등 탈북자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현재 4천명에 육박하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3. 12. 10>

26) '좋은벗들'이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서는 문제이다.

북한인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위협으로부터의 공포'와 '식량난'이다. '전쟁공포'는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을 통해, '식량난'은 '조건없는 지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요컨대,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몫은 **대북전쟁위협의 제거와 한반도 평화조성, 자결권의 존중, 인도적 지원**이다.

2. 미국 주도의 '대북 공세'에 반대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노골적 패권주의(제국주의)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며, 현재의 '인권 문제제기' 역시 50여 년간 지속됐던 대북 정치공세의 일환에 불과하다. 최근 북한자유법의 입안을 통해 미국이 북한 체제의 자체붕괴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자유법안의 핵심은 탈북자 지원을 명목으로 탈북리서를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 해외 반북세력을 양성하며, 이러한 대내외적 압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내부 붕괴를 유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은 1차적으로 중국정부가 탈북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그러한 고려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중국 및 북한 정부의 더욱 경색된 대응을 초래함으로써 탈북자 인권문제의 악순환을 가중시킬 것이 우려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대북 인권공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상황의 반전은 어려우며, 결국 미국을 북한 인권 논의의 장에서 얼마만큼 배제시킬 수 있느냐가 과제다.

3. 인권문제에 있어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상, 북한인권문제는 해마다 유엔인권위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인권운동 진영이 해야 할 몫은 미국주도의 정치공세에 제동을 걸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일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곧바로 남한 인권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지형의 강화가 남북 모두에게 인권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이해시키는 것은 남한 인권운동 진영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남한 당국을 상대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예컨대 '북한자유화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남북 공동의 인권의제 설정'²⁷⁾ 등을 촉구함으로써, 인권문제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그것이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온전히 '인권의 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27) 어느 한쪽의 인권문제만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건설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없다. 따라서 '인권문제'의 의제화는 반드시 남북 모두가 문제당사국임을 전제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북한 인권, 이렇게 본다

2003. 12. 9. 창조리

1.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1-1. 상황 1 : 북한인권 이슈의 국내외적 확산

- 2003년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국제사회의 공식의제화
- 국내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 및 행사 확산.

1-2. 상황 2 : 남한 진보진영에 대한 수구진영 공세 강화

-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마치 '인권운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도 되는 양,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저의를 문제삼아, 남한 내 진보운동, 인권운동진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3. '문제제기'의 성격

: 현재 북한인권 문제제기의 핵은 '미국'. 여기에 미국 내 민간단체들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내 민간단체, 그리고 국내 수구진영들이 대북 인권공세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형세.) 그러나 이들의 문제제기는,

- ① 미국 주도 대북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인권을 빙자한 '체제붕괴'전략-북한민주화론)
- ② '체제의 특성'을 '인권문제'로 비화시킴으로써, '문제'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①과 동전의 양면이다)
- ③ 북한사회 내 이성적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북한은 '이성과 문명이 지배하지 않는 야만 사회'일 뿐이며, 북한 인민들을 '주체적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열등 인간'들로 보는 것이 이들의 견해임)
- ④ 문제제기의 소스가 여전히 일방적이며 불분명하다는 점(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주요 소스는 망명자 혹은 탈북자들임. 그러나 이미 체제를 이탈한 이들의 증언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음)

- 1)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왜 외면 혹은 침묵하고 있는가? 필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운동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운동을 펴야 한다고 본다"(허만호, '북한인권, 진보세력이 나서야', 2003. 4. 29. 한겨레)
- 2)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럽연합'의 주도 아래 채택되었다고는 하나, 결의안 채택 이후 유럽연합 측으로부터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음. 여전히 대북 인권공세의 핵은 '미국'이며, 이는 '미국정부-미국 민간단체-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내 민간단체'를 축으로 이뤄지고 있음.
 - 6월 6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북한의 총체적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을 미 정부에 촉구.
 - 7월 16일, 미국 민주주의기부재단(NED),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자 3명과 북한인권시민연합 윤원 이사장에게 '올해의 민주주의상' 수여.
 - 11월 21일 미 상원, '북한자유법안' 상정. 미국의 이지스 재단, 미국 전역에서 북한자유법안 지지 서명운동 돌입.
 - "미국 전국민주주의재단(NED)의 지원을 받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국내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두 단체로 이들 단체는 지원자금을 북한 인권관련 학술회의 개최, 소식지 발간, 탈북자 정착 지원등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두 단체는 미국 국무부가 24일 발표한 2002-2003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 "미국 정부는 NED에 25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NED는 두개의 한국 NGO에 이 자금을 다시 제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연합뉴스, 2003. 6. 25)
- 3) 인권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체제 구성원의 주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론이 갖는 허구는 미국의 대외침공 역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50여년 간의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 인민들이 과거 아메리카의 흑인노예들보다 열등한 위치와 의식을 갖고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 4)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서 정치범 수용소등 북한의 실상이 과장, 왜곡된 채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일부 탈북자가 행한 미의회 청문회에서의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에 대해 '실상을 왜곡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탈북자들의 진술 전부를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3. 6. 9)
- 5) "북한에서 활동중인 세계식량계획(WFP)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의 시골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인육을 내다판다는

⑤ 북한 체제의 전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에서,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 즉, 현재의 문제제기는 그 '출발'(정치공세)과 '내장'(문제의 왜곡), '형식'(일방적 문제제기) 등 모든 면에 있어 '정상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올바른 '결과'(북한인민의 인권신장)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문제제기는 인권보장의 주요변수 가운데 하나인 ⑥ 국제질서의 구속력을 사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물론, 어느 사회든 인권문제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북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식량참사 자체가 중대한 인권문제이며,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 사회'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궁극적으로 체제 내부로부터의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당연(이러한 점에서 북한 체제의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형식논리적으로는 당연해 보이기도 함). 그러나 국외자의 처지에서 접근할 때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무엇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점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전환(타도 혹은 붕괴)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

: 따라서 남한 인권운동진영의 당면과제는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시각부터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①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관한 '미국'의 영향력을 탈각시킴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를 온전히 '인권'의 장으로 되돌려 놓는 것 ② 북한인권의 '문제지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필요.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지형의 강화가 양쪽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인권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 인권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③ 남북 공동의 반성적 접근이 아니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중요.

2. 북한인권. 그 원리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체제 내 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체제 자체가 인권보장과 양립할 수 없는 체제"라는 인식(자유주의 일반의 시각)에 반대하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체제의 문제와 동일시'하는 관점(체제환원론)에 반대한다. 거꾸로 말해, 북한이 표방하는 워리들은 '인권보장'의 한 방법일 수 있으며, 문제는 그러한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의 점이라는 것이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다)

- 거듭 확인해야 할 사실은 북한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체제이며,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 인권을 보장하는 원리 역시 상이하다는 점이다.

국내 논자들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흔히 문제삼는 내용은, '집단주의'(개인의 기본권 부정), '인권의 보편성 부정', '계급차별'(신분차별),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무시', '일당독제', '시민정치적 권리의 경시' 등이다.

-1. 집단주의의 원리

언론 보도는 일부 기자들이 주민들을 매수하여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평양에 주재하는 버지트 캘그렌 WFP 국장은 '우리는 문명사회 속에 있다'면서 '이같은 일(인육 판매)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997. 5. 2)

6) 미국 내 인권상황의 열악함과 관련해, 자본주의 체제의 포기를 촉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것은 미국 내 인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 '좋은벗들'로 대표되는 중도진영은 그동안 '인도적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서서히 '문제제기'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의 접근방식이 다분히 '비정치적'인 입장인긴 하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석에 있어, 수구진영의 인식과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중도진영의 단체들이 올바른 인식과 접근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진영의 경우, 북한에 대한 일방적 방어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북 인권에 대한 유보적 혹은 방어적 태도), 이러한 진보진영의 입장은 북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적극적 공세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 '집단주의=개인의 기본권 부정'으로 보는 시각은, 그 자체로 '집단주의'에 대한 몰이해(혹은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내세우는 집단주의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집단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후자의 슬로건을 슬그머니 빠뜨린 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만을 부각시키며, "북한의 인권이론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인민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생명처럼 떠받드는 북한의 체제원리에 대해, '개인'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 실제로 북한은 '집단주의'가 그 자체로 인권보장과 양립 불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론이 '개인의 자주권'을 강조한다는 점⁹⁾, 헌법(체제운영 원리의 총화)을 통해 '사생활의 보호'와 '가족의 보호' 같은 개인의 고유한 영역을 인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는 점 등이 그 실례이다.

: 이런 점에서, '인간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받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자유주의'적 인권원리와 '인간이 사회와 분리되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파악하는 '사회주의'적 인권원리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인권보장의 원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어느 원리를 선택하느냐는 해당 인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 요컨대, '집단주의'원리를 들어 북한을 '반인권체제'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2-2.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 북한의 인권론에 대한 주요 비판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며, 둘째는 '인권의 계급성'에 대한 비판이다.

2-2-1. 체제의 차이(상대적 잣대의 문제)

: 2001. 3. 1. 조선중앙통신은 "지구상의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인권보장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은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¹¹⁾. 문제는, '상이한 인권기준'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 현존 사회체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가지 체제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할 경우, '사회주의의 인권기준'과 '자본주의의 인권기준'의 상이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러한 상이성을 존중하는 것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¹²⁾.

8) 이원웅,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2001.

9) "개인은 집단을 떠나서 자주성을 가질 수 없지만,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자주적 권리가 유린된다면 사회집단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인권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주권인 것이다"(<새시대 정치학원론> 중에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1981. 6. 25. 김일성)

10) 실제로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다. 사회주의 체제보다도 훨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조차 사생활보호는 형식적 법조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반테러법 관련 조치들이 이를 입증한다.

11) 나라마다 물적 조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인권보장의 구체적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내의 가용자원이 한정된 나라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방송·신문·출판 등 각종 표현매체에 대한 인민의 접근권·활용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인민의 의식주 해결 쪽에 우선 배분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 보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권침해라 부를 수는 없다.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옥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민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과 감옥에서의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감옥의 편의시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감옥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권의 소극적 보장)은 별개의 문제다.

12) 다만, 이러한 '상이한 기준'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존중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이 문제는 일단 차치해

: 한편, 북한이 '상대적 잣대'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인권레짐의 형성과정 및 작용이라는 문제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¹³⁾. 즉, 북한이 '상대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공세가 '자본주의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일방적 강제로 비춰져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 오히려, 북한 스스로도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 즉, 북한이 부정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이 아니라, '서구식 인권의 보편화'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견해=진리'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면, '자본주의적 인권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정의로울' 수 없다. 무엇이 보편화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어느 일방의 '강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 전제는 '체제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권실현의 보편화'를 규정하는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2-2. 인권의 '계급성'(신분차별의 문제)

: 둘째로, 북한이 말하는 '인권의 계급성'¹⁵⁾ 문제가 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인권 향유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포장'된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권이 '계급적 권리', '민중'의 권리'이며, '사회의 적대분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권리임을 '솔직히' 주장하고 있다.

: 문제는 그 사회에서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 자유주의 체제든, 북한체제든, 어느 쪽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이 단계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는 '인권의 향유 주체'를 원리적으로 제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초점이다.

: 1995. 6. 24. 로동신문은 같은 사설에서, "인간쓰레기들에게 인권이란 말은 당치 않다. 사회주의 사회는 결코 반혁명분자들에게까지 선의를 베푸는 초계급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원리적으로 '인권의 향유 대상'을 일정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북한에서의 적대분자가 '나면서부터 규정되는' 혹은 '이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뒤에도 유지되는' 신분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어디에나 범죄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해선 일정한 '공민권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상례이다. 북에서 규정하는 '적대분자'가 '행동'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정되는 존재라면, 그것은 남한 사회에서의 일반 '범죄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¹⁶⁾. (물론, 처벌이 범죄에 상응하느냐 아니냐가 또 다른 논점일 수 있다. 이는 역시 이 단계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① 북한은 원리적으로 권리의 차별(신분의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② 북한에서의 '권리차별'의 대상은 일반 사회의 '범죄자'와 다르지 않다. 후자는 문제삼을 이유가 없으며, 전자의 경우라면, 북한의

된다. 그러나 체제의 원리를 존중한다고 해서, 각국의 개별적 인권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원리와 현실은 분명히 구분해서 문제삼아야 한다.

덧붙여 일국의 체제운영원리에 대한 비판은 1차적으로 해당국 국민의 몫이다(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질서에 대한 권리는 인민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세계인권선언 28조). 국제사회가 체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색깔로 덧칠 될 수밖에 없다.

13) "각이한 전통,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을 무시하고 어느 한 나라나 나라들의 그루뵤의 가치를 다른 나라들에 내러 먹이면서 그 가치를 '보편적으로 공인된 기준'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우리는 특히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 기준, 빨럭정치의 적용을 반대한다"(1995. 3. 9. 로동신문).

4) "인권은 한 나라의 범위 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장되고 옹호되어야 할 인류공동의 신성한 권리이다"(안명혁, '미제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 1990)

15)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1995. 6. 24. 로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위하여')

6)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적인 척도는 사회계급적 토대가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의 문제"(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의교 연구>, 2002)라는 지적은,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대중'에 애국적 자본가계급도 포함됨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대분자'라는 지위는 '행동에 따른 사후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적대분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정치적' 권리에 한정되는 것인지, 사회경제적 권리의 박탈로 확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 한편, 북한이 '민중의 권리'와 '권리의 계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권리의 향유주체를 특정 계층에 국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의 인권'론이 갖는 허구성을 강조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일당독재, 사법권의 종속 등에 대하여

: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로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표방한다. 이러한 원리 속에서는 다당제나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주의적 원칙보다도, '인민주권'의 원칙이 강조된다. 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러한 '독재(체제운영의 원리)'에서 비롯된 필연적 현상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재'나 '아니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검토를 요구하는 문제다.¹⁷⁾

: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치가 '인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는 아닌데, 이에 대해 ① 자유주의 체제는 '다당제와 3권분립¹⁸⁾' 등의 장치를 ②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의 소환권'을 중요한 장치로 내세우고 있다¹⁹⁾. 둘 모두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이며,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인가의 문제는 다시 '선택'의 문제이자, 해당국 인민의 몫이다.

: 따라서 '일당독재'²⁰⁾ 혹은 '사법권의 미독립' 등을 이유로 북한을 '반인권 체제'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불어, 인권침해의 근원을 '독재'에서 찾고 '독재의 포기'를 요구사항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북한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²¹⁾.

2.4. 소결

: 북한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와는 상이한 원리에 입각해 인권보장의 실현을 꿈꾸는 체제이다.

: 문제는 이러한 '원리'들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5. 북한인권, 그 현실에 대하여

5-1. 전쟁위협으로부터의 공포

: 한 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질서로는 크게 두 가지 질서가 요구된다. 첫째는 '사회적 질서'(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적 조건)이며, 둘째는 '국제적 질서'(국제적 조건)이다. 문제는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 '국제적 질서'가 '사회적인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²²⁾. 내인과 외인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다. 많은 이들이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논하며, 그것이 '인권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사회, 북한정권이 경직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7)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자유주의 국가를 '민주주의'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 의회에서 단 하나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며, 모든 입법과 사법행위가 '친자본'적으로 이뤄지는 의회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8) 자유주의 체제에서 3권분립(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는 까닭은 역설적이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인민의 의사에 반할 경우, 그것을 인민이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19) 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언제나 소환의 대상이 되는 사법부와 형식적으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사실상 가진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법부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인민의 권리를 충실히 담보해줄 수 있는가?

20) 사실, 한번도 '민중의 당'이 권력을 쟁취해본 적이 없는 한국의 정당사 또한 '부르주아 정당'의 독재사에 다름 아니다.

1) 만일 '사적소유제도가 권리 침해의 근원'이라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

22) 남한 민중들에게도 '세계화'로 상징되는 국제질서가 인권을 옹호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작 가능한 일이다. 해방 이후 50년이 넘는 적대관계와 특히 상시적인 미국의 침략 위협(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나아가 이라크 침공을 통해 현실화된)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부들이 체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체제에서 주민들의 인권실현이 억제될 소지 역시 충분하다. 따라서 '전쟁위협'의 제거는, 북한 인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선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2. 식량난과 생존권

: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크게 '내인'과 '외인' 두 가지 진단이 제출되고 있다. ① '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진단과 ② '경제붕괴 및 자연재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진단이다.

: 여기서 ①의 진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로 한다. 실제 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지, 그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배경지식도 전문적 식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대정신>의 이광백 편집위원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북한의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비율은 약 3분의1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2.7%, 미국이 4% 미만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침체, 그리고 인권문제는 ~수령 절대주의사회와 군사독재 체제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일 뿐이다"²³⁾. 즉, 북한정부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식량난'과 무관치 않으며, 이는 '식량난'이 결국 '외생적 요인'(대외관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 식량난의 심각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

: 한편, 북한의 식량난은 2차 인권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한다. '좋은벗들'은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도강자(월경자) 단속과 과도한 처벌 문제, 감옥에서의 열악한 처우, 이동의자유 제한,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제약 등을 주요한 인권문제로 지적하고 있다²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형벌권의 남용'과 '비인도적 처우' 등은 남한 민간운동진영이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동권 보장'(구체적으로는 통행증의 폐지)이나 '개인영농제도의 도입' 등의 주장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본질적 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하다²⁵⁾. 이미 북한에서는 통행증이 무용지물화 되었고, 개인적 장사와 영농도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식량난도 조금씩 해소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인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얼마나 더 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체제 자체의 전환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이는 결국 인민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

3.3. 체제와 무관한 인권문제

: 북한의 정권담당자들은 해방이래 줄곧 '사법일꾼'들의 인권침해를 경고해 왔으며,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이 될 것을 강조해 왔다. 이는 50여년에 걸친 사회주의 체제의 실험 속에서도 '권력'을 빌미로 한 인권침해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수사·구금기관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와 고문 등의 행위는 체제와 무관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인권문제이며, 이는 현존 체제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북한의 '자유권'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다. 이에 대해선, 아직도 실체적 진실이 불분명하다. 탈북자들 스스로도 "정치범수용소등에 대한 실상이 과장, 왜곡된 채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감옥에서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반성하며 협력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3.4. 공개처형 문제

: 사형제도를 온존시키면서, 공개처형이 인권적이나 전기살인이 인권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형제도는 각 나라들에서 즉각 사라져야 할 제도이다.

23) '포기할 수 없는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중에서(한겨레, 2003. 8. 5.)

24) 노옥재, '북한인민의 권리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안', 2003. 12

25) 우리 정부를 상대로 '주민등록제도의 폐지'나 '공유지에 대한 사적점유권'을 인정하라는 주장과 비교해 보자. 어느 나라에나 주민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시스템을 문제삼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와 사적소유 시스템을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

4. 북한인권, 그 접근시각에 대하여

4.1. '인권의 잣대'로 접근하자는 관점에 대하여

: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정치는 정치의 논리로, 인권은 인권의 논리로"라는 입장이 주된 견해로 보인다. 이는 북한정권 타도를 저의에 깔고 있는 세력들이나, 북한인권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세력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입장들이다. 다시말해, 어떠한 입장에서든 그들이 처한 '정치적 견해'를 기반하지 않는 '순수한' 인권적 논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 그러나, 최대한 정치적 색깔을 털어내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인권이 '정권 타도'의 목적을 감추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역으로 '정권 수호'의 입장에서 '인민의 인권현실'이 외면되어서도 안 된다.

4.2. 상호성의 관점

: 북한인권문제는 남한의 인권문제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반성적 관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일방에서 다른 일방의 인권문제만을 문제삼는 것은 전혀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한다.

: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함에 있어, '주체사상의 언어로써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태욱의 견해를 참조.

4.3. 반제국주의의 관점

: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억압국과 인권피해국의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전 세계 민중들의 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쪽은 '인권억압국' 즉 '제국주의' 세력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마땅히 국제적 인권보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북한사회가 심각한 전쟁위협 아래 놓인 사회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북한인민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1차적 문제'이다.

4.4. 소결 - 무엇이 북한 인민을 위한 길인가?

: 전쟁의 공포와 식량문제의 해결

: 대북식량지원과 한반도 평화 확보와 북미관계의 개선.

: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의 장에서 떠나야 한다.

<사족>

'북한인권'을 둘러싼 지형은 '제국주의 세력' v. '약소국'의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혹자들은 '제국주의 세력'의 주장에 찬동하며, 그것은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인민'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한나라당이, 조선일보가 북한의 인민들 편이라는 주장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다. 그들은 왜 지금, 아메리카의 인권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는가?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사회라고 한다. 인민 개개인과 국가, 사회 사이의 관계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한다. 물론,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일 터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이 더 이해 못할 광경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인민'의 선택을 믿는 도리밖에 없다. 북한인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도자와 자신들의 체제를 믿고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과 '북한인민'의 인위적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강자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다. 남한 인권운동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원웅, 정태욱의 북한인권문제 접근시각에 대하여

자료

- : 이원웅,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2001. 경상대 통일문제연구소)
- : 정태욱,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2001. 민주법학 20호)

I. '북한의 인권론'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하여 체제의 민주화 및 인권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또 그러한 변화의 조건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체제의 민주화가 무엇이고, 인권이 무엇인가”(정태욱)

쟁점①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정=집단주의

(정) : 북한의 인권관은 서구의 인권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경. 북한에서 인권은 사회주의의 당파성에 기초하고, 또 수령중심의 권위주의적 지배질서 속에서 해석됨. 나아가 북한의 인권은 사회적 책임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사회보장적 물질적 기초가 중시됨.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은 집단주의적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 : 북한의 인권인식에 있어 첫 번째 문제점은 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듯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개인.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개인의 수체성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북한의 인권이론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북한에 있어서 인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로 한정됨. 북한은 이것을 인권의 당파성으로 설명하고 있음. 즉 인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 달리 말하면 보호할 계급의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계급의 인권은 다르다는 것.

: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인 집단주의적 입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현실에도 맞지 않음. 현재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 인권'은 독립국가의 대외적인 주권과 원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고 있음. 또 현대 인권이론에 있어서 집단적 인권은 개인적 인권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그것은 개인적 인권과 서로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됨.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집단적 인권만이 존재하고 개인적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제인권규범과 양립될 수 없는 '북한식 인권'일 따름임.

: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성'이라는 개념도 근본적으로 집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권규범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 북한의 자주성은 방어적인 의미를 지니며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항하는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인권과 대립적인 의미를 내포. '자주적 인권'이란 북한 통치엘리트가 느끼고 있는 안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체제 방어적인 논리임.

> Q. '북한의 집단주의=개인의 독립성 부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쟁점② 보편성의 부정=문화상대주의적 시각

(정) : 인권개념이 보편적인 것인가 혹은 상대적인 것인가와 같은 인권에 대한 철학적 규정은 본질적인 논점이 아님. 오히려 문제는 이쪽의 인권과 저쪽의 인권관이 서로 크게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동시에 양쪽의 우호선린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 즉 '정당한 인권'보다 인권에 관한 '정당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

: 인권에 대하여 전적으로 문화상대주의에 기울면, 인간존엄의 기초를 상실해 버릴 우려가 큼. 다만 국제질서의

보편적 규범적 원리로서의 인권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개념과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 : 신생독립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인권규범이 서구적인 가치에 대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식 인권', 혹은 '자주적 인권'이란 개념도 이러한 비판 가운데 하나 → 그러나 문화적 상대주의로 대표되는 인권에 대한 다원주의적 입장은 오늘날의 인권이념의 발전과 국제사회 변화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3. 쟁점③ 인권범주의 분리=시민정치적 인권의 경시

(이) : 북한의 인권이론은 정치적·시민적 인권과 경제적·사회적 인권 등 두 개의 인권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음. 북한의 인권이론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인권범주를 분리하여 고찰. 즉 정치적 인권을 '부르조아 왜급'의 인권사상이며 경제적 인권을 사회주의 인민대중의 인권이라는 계급적 구분도식임. 그리고 초계급적인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인권이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 현대 인권이념은 정치적 인권과 경제적 인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지 않음. 다만 사회체제와 문화적 배경아래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는 내포할 수 있음. 현대 인권사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정치적 인권 및 경제적 인권이 모두 함께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4. 쟁점④ 국제인권레짐의 도덕적 가치 배격=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해계모니적 해석

(이) :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음. 국제인권규범이 과연 실정법적인 수준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는 널리 인정되고 있음. 오늘날 인권규범이 국제사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권보호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성 때문. 인권규범은 전적으로 현실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권력정치나 실정법적인 실효성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국제정치를 비판하고 교정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도 내포. 다양한 인권규범들의 발전은 인권보호가 인류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임을 입증. → 이에 반해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을 단순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해계모니로 파악하고 있음. :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문제를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 논리로 반박.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에 비유. 북한의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양립될 수 없음. 현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외면하고 개별적인 인권기준을 고집하는 것.

II. 북한 인권문제의 현안

1. 총평

(이) :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①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제한과 ②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문제. 두 가지 인권문제는 모두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모순에서 기인. 북한 통치엘리트는 대내적인 모순과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긴장을 적절히 조작하여 대중동원에 이용하는 방법을 구사. 북한의 정치체제는 대중적 불안감을 정치적 동원에 이용하고 있는 일종의 '병영체제'. 북한의 인권탄압은 바로 이러한 위기인식을 제도화한 억압적 정치체제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음.

2. 쟁점 ① 시민정치적 권리의 유린

(정) :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좋지 않음. 권위주의적인 유일사상체제 속에서 ①정치적 자유와 사상·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미약, ②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법절차를 위한 형사적 권리와 제도 기쁨, ③주민 간의 계층적 지역적 차별 및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차별대우 존재, ④참정권의 유명무실화. 특히 ①북한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에 대한 박해와 공개처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 : ① 정식재판 절차 없이 집단수용한 일종의 ②강제노동수용소와 같은 형태의 ③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죄수들

은 정식 재판절차 없이 정부의 행정적 절차만으로 수용이 결정됨.(1994년 국제엠네스티 보고서는 49명의 북한 정치범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적 특징과 '반혁명분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북한의 논리를 볼 때 고문과 구타, 불공정한 재판절차, 즉결처형, 불법구금 및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는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음.

3. 쟁점② 기본-생존권 문제와 해결방안

(이) : 북한 기아문제는 북한의 체제적 모순에서 비롯된 '경제적 인권' 문제. 특히, 북한사회의 기층민중계급이 아닌 소위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사람들, 어린이나 노약자 층에 있어서 식량사정은 매우 절박한 상황. 그것은 북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에서 기인한 문제임.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정책의 구도아래 진행되고 있음.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 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는 분명한 개념 정립이 시급.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는 정부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경제적 인권문제라는 원칙 하에 식량지원 문제와 정치적 협상을 연계시키려는 북한 측의 의도는 거부되어야 함.

(정) : 북한의 대기근이 사회주의 경제의 부실함과 농업시스템의 결함 나아가 북한의 수령중심체제의 무책임성에서 전유한 바 크다는 주장은 일용 타당함. 북한의 정치체제의 결함이 대기근 사태의 주요원인임. 그렇다고 하여 인권문제에서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정신'에 배치됨. 주체사상 및 북한의 통치이념의 관점에서 인민의 생존과 복리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인도주의적 원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인권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지 그것을 정치적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가 혹은 공적인 기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를 각각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인도적 문제는 인권의 보편적 이념에 따라, 정치문제는 평화와 공존의 이념에 따라, 그리고 경제문제는 상호 이익이라는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각기 접근해 들어가야 함.

· 쟁점 ③ 평화보장의 문제

(정) : 북한의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명분은 바로 전쟁위협. 군부권위주의 체제야말로 남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회의 인권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됨. 북한의 폭압적인 형법이나 정치범수용소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제확립의 10대원칙등과 같은 공포와 맹종의 정치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전쟁의 위협성임. 우리 각 인권상황이 바로 그러한 분단과 안보의 차원에서 가장 심한 왜곡과 축소를 보여 왔듯이, 북한의 혹독한 인권상황의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을 수 있음. → 사정이 이렇다면, 북한 인권에 대하여 논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의 확보, 그리고 북-미의 관계개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접어두고 단지 북한체제와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과 개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한반도와 북-미관계의 정치역학의 소용돌이에 오히려 악용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음.

5. 쟁점 ④ 인도주의적 현안

<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

(이) : 남북 이산가족은 오늘날 분단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인권침해 피해자. 이산가족 재회 및 가족방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권현안(=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Q. 이산가족상봉=인도주의적 현안≠인권현안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처 귀국문제>

(이) : '거주이전의 권리'에 대한 위반. ⇒ Q.

⇒ 북한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진단 = 권위주의적 유일사상 체제, 병영체제, 체제의 폐쇄성과 모순, 정치체제의 결함, 전쟁의 위협(공포).

⇒ 그러나 인권문제 해결의 접근방안에 대해선 상이한 태도를 보임.

III. 접근방법

(1) 정태욱

1. 북한인권문제의 성격

: 북한의 인권문제는 야날의 칼과 같은 위험성을 지닌 문제. ①북한에 대하여 가혹한 추궁이 되어, 미국과 남한의 강경보수파들의 정치공세를 복돋는 일이 될 수도, ②북한의 인권문제를 접어두고 평화와 통일만을 얘기하는 것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궁핍과 부자유를 방관하고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을 옹호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①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박성을 반영하고 ②남한 사람들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됨.

2. “유럽식 접근태도(=인권을 위한 대화)를 참고하자.”

: 북한의 인권문제의 양쪽에 놓인 함정을 피하면서 인권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북한은 미국의 인권 외교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을 강조. 그러나 유럽연합과는 인권을 위한 대화에 합의를 보았으며,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태도가 중요한 변수. 인권문제의 계기가 ‘인권을 위한 대화’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함. 유럽연합은 그 대화의 정신을 “평등과 상호존중의 관점”으로 얘기

: 대화의 당사자로서 평등한 지위를 상호 승인한다는 것은 다시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상호 애정 어린 비판을 하고 설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3.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상대에 대한 인정

: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 이런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붕괴 내지는 변혁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봄. 이른바 저항권발동론, 북한민주화운동론, 국제법상의 인도적 개입론 등이 그에 해당.

: 그러나, 북한 정부의 대표성을 부인할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북한의 통치절서를 존중하면서 인권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합당. 북한 주민이 성취해 온 역사와 북한 주민이 간직해 온 전통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과연 그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온전히 감안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의식구조 하에서의 지원과 운동이 북한 주민을 참으로 인권의 주체로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러움.

: 북한체제의 개혁과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이들의 선이해(先理解) 속에는 북한에 대한 멸시와 자유주의의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북한에 대한 비판도 북한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지배의 욕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 이러한 경멸과 타자화(他者化)로써는 어느 누구의 인권도 개선시켜줄 수 없으며, 진정한 연민과 동포애가 결여된 인권옹호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성의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예측과 굴종을 낳을 수 있음.

북한이 인권의 보편성보다 당파성을 강조하고, 또 수령의 지도력 속에 인권을 흡수시키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인권관을 무시하면서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님. 만약 그렇게 하여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불행한 ‘내부식민주의’를 낳을 수 있음.

4. 반성적 접근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갈 것인가? ①상대방의 논리를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것 ②나의 견해와 입장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상대방으로부터 보충받는 것.

: 북한과의 대화가 단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류임. 그런 대화는 은

해진 선전선동과 다를 바가 없음. 북한과의 인권을 위한 대화는 바로 우리의 인권상황도 아울러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자세로서 북한에 접근해 가야만 할 것임.

: 인권의 대화는 상호 우열을 가리는 승부가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이념에 대한 공동의 추구하고 배움의 과정으로 승화되어야 함.

: 상대의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 우선 이 쪽의 잣대가 아니라 상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하여 얘기하는 기법이 필요. 북한의 기아와 정치적 억압을 지적함에 있어 그것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북한의 이념인 주체사상의 언어로써 얘기할 수 있어야 함.

5. 공동의 의제설정

: 인권에 대한 공동의제는 당사자들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보편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그 보편성은 서구 전통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구해질 수도 없을 것이며, 북한의 유일수령체제인 주체사상의 확장에서도 구해질 수 없을 것임.

: 인권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것으로, 혹은 각 이데올로기의 공통적 구성부분으로 만들어야 함. 그것은 인권의 하부구조인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용을 전제로 함. 그러한 체제이념을 근거로 인권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삼가고,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체제이념 자체를 타격하는 것도 자제하자는 것. 다만 그 체제이념이 인권을 무력화하는 그 지점에 가서는 인권을 수호하자는 것임. 즉 인권을 각 체제이념의 과도한 질주를 제한하는 한계로서 이해해야 함.

: 이것은 보편적 인권의 범위를 가능한 좁혀서 이해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인권의 핵심이 갖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북한에 대하여 어떤 지적과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① 개인의 생존과 최저생계 ②정치비판자들의 대우 ③공론의 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을 것임.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의 방식

① 북한민주화운동론 :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을 도탄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입장. 이른바 최근 국제관계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개입"의 논리 ②국제기구나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 ③민간기구에 의한 지원과 문제제기

7. 국내 다수 논자의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관여의 한계)

: 북한의 인권상황이 절박하고 심각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국제적 간섭이 당연히 정당화되고, 또 항상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비판적 규정과 그에 대한 간섭의 실효성 및 정당성의 문제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어떤 관점과 방책이 증오를 부추김이 없이, 평화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집단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을 취해야 함. 현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내 다수의 논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방안들은 대체로 일방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

7-1. 저항권 발동론, 북한민주화운동론 등에 대해

: 북한 체제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표명하며 북한 수령체제의 타파를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움

: 그러나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현재 한반도의 사정상 더 큰 위험과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북한의 통치질서를 존중하면서 인권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합당.

: 주권은 인권보호의 요청과 배치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의 보호막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즉, 주권은 집단적 인권. ("개인의 권리는 정치적 과정과 사회적 조건에 의존함이 없이 인격과 도덕적 주체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권리의 시행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단지 권리의 목록을 선포하고 난 후 비로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무장인력을 갖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권리는 집단적으로 승인되는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권리들이 승인되는 과정은 정치적 장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과정인 것이다." Michael Walzer)

7.2.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이 또한 부적절. 다만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과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인권에 대한 건설적 대화, 즉 한민족의 발전방향에 관한 성찰로서의 인권의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유는 필요할 것.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일방적 비판이 아니라 남쪽의 인권상황도 같이 검토하는 상호성과 보편성의 관점이 유지되어야 할 것.

7.3.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것이 아닌 유엔에 의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

: 이는 정당하며 또 필요함.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며, 또 국제인권규약들에도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북한도 유엔 차원의 인권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B규약보고서 제출 등).

: 비록 보편성과 실효성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엔의 권위와 국제인권규약의 규범성은 존중되어야 함. 하지만 유엔은 기본적으로 주권국가들의 모임이고, 국가들 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즉 유엔은 국제 현실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조율하기보다 오히려 그에 의하여 규제되는 면이 많은 것.

: 유엔의 인권기구에 의한 활동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정치적 조건들 혹은 적정한 세력균형과 결부되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은 이상 국제기구의 인권옹호활동은 미국의 대북한 공세의 일환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는 것.

7.4. 민간기구의 역할에 대해

: 민간기구의 역할을 국제기구의 종적 지위 혹은 정부를 대신하는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 다만, 민간단체가 공적 지위에서 그리고 자율적인 활동으로서 북한체제와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충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일. 단체들은 그들의 일관된 척도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음.

3. 결론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과 간섭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제정치적 조건과 그것을 감안하는 규범적 접근이 필요.

북한의 체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그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간섭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없이 북한의 인권상황만을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관용의 원리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결국 북한 체제와 인권의 문제를 긍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외부적 간섭보다도 자율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기대하는 것.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북한 자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인권문화와 민주주의의 모델을 기대하는 것이 일의 순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은 어떤 우월의식이나 경멸감이 아니라 연대와 연민으로써 이뤄져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복돋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고 그 인권상황을 개탄하는 마음에는 북한 주민의 역량을 무시하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의 잣대에 맞게 일방적으로 개조하려는 충동, 즉 내부 식민주주의적 발상이 숨어 있는지도 모름.

북한 정부는 오히려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가장 중요한 인권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

(2) 이원웅

: 북한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1. 북한인권문제의 성격

①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 ②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됨.

2.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

: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는 남북 체제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한 전

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①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대결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북한 자체가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와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남한의 인권상황도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 ②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무조건 '보수우익'의 당파성, 혹은 냉전적 사고로 간주하는 시각도 문제가 많음. 이 시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대국의 인권의교와 동일시하고 있음.

3. 북한 인권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

①북한체제 내부 수준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 : 북한의 인권이론은 국제인권규약이 내재하고 있는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음. 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관건은 북한의 체제 변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통치엘리트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② 북한 인권문제와 남한 및 동북아 주변국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연계성(連繫性)을 살펴보는 것 :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인권상황 및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음. 북한의 인권문제는 '한반도 전체', 혹은 '동북아 전체'의 인권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③ 국제인권레짐과 북한과의 상호관계 : 즉 국제레짐의 개입과 상호작용 및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

4. 북한 인권문제 연구를 위한 분석틀

: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함.

: 국제적인 차원이란 문제제기의 주체가 국제기구 혹은 NGO이며 또 인권침해의 기준이 국제인권규범이라는 의미.

: 인권문제가 가지는 보편적 특징은 국내 관할권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레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도덕성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

5.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 즉 현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 측의 거부를 초래하고 남북협상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우려. 한편, 지식인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시기상조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우세.

: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식해 왔음.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음. 그것은 남한의 민주화로 인한 인권상황의 개선, 국제사회의 압력, 북한인권문제의 연계성 등 앞서 지적한 요인에 기인.

: 정부차원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① 남북대화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한 대북 직접협상 방법 ②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인권제도를 통한 문제제기 ③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인권레짐의 창설 ④ 대북 직접 제재방안 ⑤ 국내의 NGO를 통한 문제제기 방안(민간단체들은 주로 국제 NGO의 대북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함. 남북체제 대립의 현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제약성 때문임.)

6. 결론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남북간 체제와 이념의 대결이라는 냉전적인 구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함.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음.

: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은 남북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 북한의 인권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과 상당히 다르며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은 북한체제의 폐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이원웅(관동대학교)

논문요약

북한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 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짚어 본 뒤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 보다 국제기구나 NGO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의 제한 등 여러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지구적 의제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I. 문제의 제기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인권운동 분야에서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및 아시아와치(Asia Watch)등 주요한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문제 등을 제기하여 왔다.¹⁾ 특히 전세계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과 경제적 참상은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 49차 회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개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제 1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제 12조에 각각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당국이 제출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인권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는 등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유엔 인권소위원회 불법구금위원회에서는 지난 1994년 북한의 러시아 벌목공 처우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1995년 인권위원회와 1997년 3월 인권소위원회에서 각각 북한의 인권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북한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인권규약 탈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²⁾

이러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이며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는 남북 체제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대결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

1) 1) Amnesty International(AI), 1994, "North Korea: New information about political prisoners," ASA 24/05/94(June); AI, 1993,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ASA 24/03/93(Oct.); AI, 1996,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ussian Federation: Pursuit, Intimidation and Abus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orkers," ASA 24/06/96(Sep.); Asia Watch and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1988,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송철복 외역, 1990,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등 참조.

2) 북한당국은 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문제 결의를 "조선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또 9월 30일로 예정된 '어린이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의 이행 보고서 제출도 연기한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1997/08/28).

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은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북한 자체가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와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남한의 인권상황도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무조건 '보수우익'의 당파성, 혹은 냉전적 사고로 간주하는 시각도 문제가 많다. 이 시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대국의 인권외교와 동일시하고 있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권문제들은 매우 정치적이고 논쟁적이다.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는 80여개에 달하는 국제인권규범이 존재하고 13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다. 또 100여개의 국가들이 '고문방지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이제 국제인권규범은 냉전 이후 국제레짐으로 발전되고 있으며(이원웅 1997) 새로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장기적인 북한체제의 변화, 혹은 북한의 민주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또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와 북한 정치변화의 연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단서가 된다.

본 연구는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점에 주목하여 국제인권레짐의 이론적 시각을 통하여 북한 인권문제의 특성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문제영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 체제 내부 수준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이론은 국제인권규약이 내재하고 있는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관건은 북한의 체제 변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통치엘리트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는 북한체제 전체의 성격변화를 가능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구권의 민주화는 바로 1975년 헬싱키 협정의 인도주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교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Helgesen 1990, 241-63). 둘째 북한 인권문제와 남한 및 동북아 주변국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연계성(連繫性)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인권상황 및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남한의 인권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심수 및 장기수 문제는 북한의 정치적 인권탄압과 맞닿을 이루고 있는 냉전적 이념대립의 산물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북한내 정치적 자유문제와 연관된 인권문제로 한반도 전체적인 인권문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 일본인 처 귀국 및 자유송환 문제, 탈북자 처우 문제 등은 일본 및 중국, 러시아의 입장과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한반도 전체', 혹은 '동북아 전체'의 인권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인권레짐과 북한과의 상호관계이다. 즉 국제레짐의 개입과 상호작용 및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어 다시 우리사회로 투입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하였지만 인류사회의 합의로 형성된 국제 인권규범을 위배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³⁾ 또 국제인권규약 탈퇴는 협약에 의하지 않은 유엔의 인권문제 개입권한을 막을 수 있는 면제의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유엔 인권기구와 NGO의 개입과 압력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

이상 세 가지 문제영역은 상호 연관성 하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통치엘리트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변화는 국제인권레짐의 압력이나 개입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 또 주변 국가와 북한의 인권문제의 연계성은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인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분석수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설명할 수 있는 국제인권레짐의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고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이론이 국제적 인권규범과 상충되는 점들을 비판적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현안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현안들과 남한 등 주변국과의 연계성을 제시

3) HRC, CCPR/C/21/Rev.1/Add.8 (29 Oct. 1997) 참조.

한 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수단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북한 인권문제 연구를 위한 분석틀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제적인 차원이란 문제제기의 주체가 국제기구 혹은 NGO이며 또 인권침해의 기준이 국제인권규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상정될 수 있는 개념은 국제인권레짐이다. 국제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한 규범, 규칙 및 실행절차들을 뜻한다(Krasner 1983, 2-3). 즉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된 90여개에 달하는 국제인권규약들은 국제인권레짐의 규범체계를 구성하며 유엔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유럽인권위원회, 미주인권위원회 등은 인권규범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실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국제인권제도들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실행절차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간 국제기구와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700여개에 달하는 NGO들은 국제인권레짐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⁴⁾ 인권문제가 가지는 보편적 특징은 국내 관할권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레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이러한 국제인권레짐의 이론적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은 헤게모니 모델과 국제 도덕성 모델 등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1. 헤게모니 모델

대부분의 국제레짐 이론가들은 국제레짐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강력한 패권국의 능력과 의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인권레짐의 경우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가들의 자유주의 이념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Forsythe 1991, 12). 헤게모니 모델은 국제인권레짐을 패권국의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타국가들에 대한 '도덕적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 혹은 절차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은 특히 인권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Huntington 1991, 21-42). 패권국은 '이념적 헤게모니'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자발적 복종을 얻어내려 한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지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제레짐이다. 헤게모니적 지배는 단순한 군사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자유주의'와 같은 이념적 기제를 사용한다(Ruggie, 1983, 209-13). 국제인권레짐은 바로 이러한 '내재화된 자유주의'를 전파하는 국제적 수단에 다름 아니다. 국제인권레짐의 실행절차가 주로 정치적 시민적 인권에 대한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실행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헤게모니 모델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아시아 와치, 프리덤 하우스 등이 모두 구미 선진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NGO들이라는 점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정부는 과거 카터정권 시절 한국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인권жат대'를 직접적으로 들이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문제가 미중간에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⁵⁾ 중국과 유사한 인권침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조만간 미국 인권외교의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현안에 대한 4자회담 방안, 즉 미국의 개입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동안 인권문제가 부차적인 카드로 유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 도덕성 모델

4)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대회에는 1,500개가 넘는 NGO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NGO는 700-800개로 추산되고 있다(Brett 1995, 97).

5) 미국 하원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끝난 직후인 1997년 11월 5일 대중국 인권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에 대한 인권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 도덕성 모델은 헤게모니 모델과 달리 국제인권레짐을 인류의 집단적 '학습'을 통한 도덕성의 구현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찰권을 포기한 [세계인권선언]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참화에 대한 인류의 반성이며 그러한 국제적 도덕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라는 것이다. 국제 도덕성 모델은 인권이 '인간존엄성'이라는 자연법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Donnelly 1989; Falk 1981). 인권을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50여년 전의 일이다. 인권규범은 국경을 넘어 국제화되고 있으며 더욱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80여개가 넘는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이 만들어졌으며⁶⁾ 1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였다. 하스(Haas)는 이러한 국제적 도덕성의 실현과정을 학습이론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상호학습의 결과 취득된 공통의 이익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규범이 반드시 본질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종의 '절차적 도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Haas 1990, 239-40). 국제도덕성 모델은 국제사회의 상호의존, 특히 대중매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권침해와 같은 이슈들은 곧바로 대중들에게 도덕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Claude 1992, 13). 예를 들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더 이상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인권문제의 국제화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상호의존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건 아래 국제인권레짐이 기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의 예처럼 국제적 도덕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III. 북한의 인권인식과 문제점

인권이 과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Forsythe 1991, 2). 특히 신생독립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인권규범이 서구적인 가치에 대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다(Pollis 1991, 237-62).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식 인권', 혹은 '자주적 인권'이란 개념도 이러한 비판 가운데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상대주의로 대표되는 인권에 대한 다원주의적 입장은 오늘날의 인권의념의 발전과 국제사회 변화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듯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개인이다(Donnelly 1991, 19-20). 비록 소유권이 개인적 인권 항목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이론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장명봉 1995, 268-40). 북한에 있어서 인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로 한정되고 있다.⁷⁾ 북한은 이것을 인권의 당파성(黨派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보호할 계급의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계급의 인권은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인 집단주의적 입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 인권'은 독립국가의 대외적인 주권과 원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고 있다.⁸⁾ 내전상태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인종적 분규가 잦은

6) 총 87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국제규약의 전체 목록은 다음 참조, "인권에 관한 주요 국제적 문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93-113). 이 가운데 57개는 유엔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Mower 1987, 1).

7) 조선말 대사전 제 2권, 1992, 사회과학출판사, p.1696.

8) '민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유럽안전보장회의(CSCE)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는 민족분쟁이 극심한 인권탄압을 가져올 경우 집단적 인권문제를 구성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 구유고사태와 이라크의 인종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바스크분리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 인권탄압 문제는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적은 경우에 속한다.

국가들에 있어서 방어적인 입장에 처한 정치집단이나 인종집단이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집단적 인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 현대 인권이론에 있어서 집단적 인권은 개인적 인권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 인권과 서로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⁹⁾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집단적 인권만이 존재하고 개인적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제인권규범과 양립될 수 없는 '북한식 인권'일 따름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성'이라는 개념도 근본적으로 집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권규범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북한의 자주성은 방어적인 의미를 지니며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항하는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인권과 대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주적 인권'이란 북한 통치엘리트가 느끼고 있는 안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체제 방어적인 논리일 뿐이다.

둘째 정치적 시민적 인권과 경제적 및 사회적 인권 등 두 개의 인권 카테고리 간의 관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다. 북한의 인권이론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개의 인권범주를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 즉 정치적 인권은 '부르조아계급'의 인권사상이며 경제적 인권은 사회주의 인민대중의 인권이라는 계급적 구분도식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를 계급사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초계급적인 인권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인권이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여 서구 식민지를 경험한 아프리카, 아시아의 신생국가들도 민주주의와 정치적 시민적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다(Monshipouri 1995, 12-3). 현대 인권이념은 정치적 인권과 경제적 인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회체제와 문화적 배경아래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를 내포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는 체제라면 오히려 정치적 시민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인권사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정치적 인권 및 경제적 인권이 모두 함께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인권규범이 과연 실정법적인 수준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뒤 국가주권의 절대주의를 기본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세계인권규범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면 이상적 국제질서를 향한 노력과 국제도덕성의 발전을 간과할 수 없다. 오늘날 인권규범이 국제사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권보호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성 때문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매개 사회와 각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있어서의 위기를 지적하고 각각의 정치체제가 도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제시하는 도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규범은 전적으로 현실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권력정치나 실정법적인 실효성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국제정치를 비판하고 교정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규범들의 발전은 인권보호가 인류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다(Hannum 1992). 그러나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을 단순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헤게모니로 파악하고 있다.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도 아니고 더우기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사도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은 그 어떤 외세의 <압력>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가 자기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담보, 보장해 줄 때 실현된다¹⁰⁾.

9)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개념을 대변하고 있는 구토(Gutto)의 경우에도 개인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은 민주주의를 매개로 상호 통합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Gutto 1993, 21).

10)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문제를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에 비유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은 '국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¹¹⁾ 북한의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개념과 양립될 수 없다. 현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외면하고 개별적인 인권기준을 고집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개방이나 타협보다 고립과 저항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자주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이념과 제도는 더욱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을 대표로 하는 국제인권제도, NGO로 대표되는 국제시민사회와 북한은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갈등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비판과 개입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IV.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제한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권문제 등 두 가지 범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인권문제는 모두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모순에서 기인하고 있다. 특히 북한 통치엘리트는 대내적인 모순과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긴장을 적절히 조작하여 대중동원에 이용하는 방법을 구사하여 왔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대중적 불안감을 정치적 동원에 이용하고 있는 일종의 '병영체제'로 볼 수 있다(한스 마레츠키 1991). 북한체제의 이러한 방어적, 전투적 특성은 '군정체제(軍政體制)'로 묘사되는 북한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이상우 1997, 245-48). 북한의 인권탄압은 바로 이러한 위기인식을 제도화한 억압적 정치체제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다. 북한의 형법체계나 절차는 외부세계에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적 특징과 '반혁명분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북한의 논리를 볼 때 고문과 구타, 불공정한 재판절차, 즉결처형, 불법구금 및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는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두 번째 범주는 최근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북한의 식량난과 기아사태이다. 특히 북한사회의 기층민중계급이 아닌 소위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사람들, 어린이나 노약자 층에 있어서 식량사정은 매우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식량난과 기아문제를 홍수와 가뭄 등 자연적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찰자들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북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부족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 혹은 경제적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북한경제의 저성장과 퇴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의 차원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문제 현안들을 살펴기로 한다.

재러시아 및 재중국 탈북자문제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러시아나 중국에 소재 하는 북한 사람들은 대략 1,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탈북자'로 불리는 이들은 아직까지 국제적인 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1996년 발표된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서는 단지 세 사람의 탈북자에게만 난민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²⁾ 이들은 러시아 별목공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촉구된 1992년 엘친대통령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러시아정부,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11) 위의 글.

12) AI, 1996, "러시아 연방내 탈북자들의 인권", ASA 24/06/96 (신동아, 96/ 12, 473-4).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국경협정에 의거하여 이들을 체포하는 대로 북한당국에 인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비정부기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문제

북한사회에서 정치범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에 알려져왔다. 러시아의 북한문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는 북한의 사상범 탄압의 기원은 1957년 5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을 전인민적이고 전당적인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란코프 1995, 282). 그는 북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근거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집단수용한 일종의 강제노동수용소와 같은 형태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149호 대상지역', '독재대상 특별구역', '49호 교화소'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수용소의 운영은 북한의 정치경찰인 국가보위부¹³⁾가 관장하는데 이곳의 죄수들은 정식 재판절차 없이 정부의 행정적 절차만으로 수용이 결정된다.¹⁴⁾ 수용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석방은 전적으로 당지도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란코프 1995, 292)

'양심수'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 죄로 수감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국제엠네스티는 특히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 혹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록 폭력을 사용한 정치범의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기일내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1994년 국제엠네스티 보고서는 49명의 북한 정치범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¹⁵⁾ 한편 북한 당국은 정치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¹⁶⁾ 그러나 국제엠네스티 보고서는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주의 국가에서 정치범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개방화와 주민에 대한 통제체제의 이완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들이 서방세계로 전달될 것이 분명하다.¹⁷⁾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처 귀국문제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재북조선인 귀국'운동은 일본정부의 암묵적인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대략 10만 여명에 이르는 재일동포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이 가운데 일본인은 6,637명이며 일본국적을 가진 배우자들도 약 1,800여명 정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애초 북송현상에서 약속한 이들의 본국 방문이나 가족들과의 재회는 북한당국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74년 일본에서는 [일본인처 자유왕래 실현운동회]가 결성되고 일본의회에 탄원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 바 있다(북한인권백서 1997, 159-62). 한편 이 문제에 대하여 북한당국은 여러 차례 해결을 언급하여 왔다. 최근 일본정부는 북한당국에 대한 식량지원협상 과정에서 연내에 15-20명의 일본인처의 일본 방문을 타결한바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

13) '국가보위부'는 1982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당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이 기구는 16개 국과 4개 처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방조직은 물론 군대 내에도 중대급 까지 조직되어 있으며 일종의 정치사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란코프, 1995, 302-3).

14)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NGO보고서는 다음 참조, Asia Watch and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1988).

15) AI, New Information About Political Prisoners, ASA 24/05/94(June 1994).

16)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된 국제엠네스티 대표단의 방북조사에서 이창하 당시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은 북한내 정치범은 240명 뿐이며 이들은 모두 적법한 재판절차를 거쳐 [형산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귀순자들의 증언내용을 부정하였다(민족통일연구원 1997, 133).

17) 안드레이 란코프는 항공사진 분석, 귀순자들의 증언, 외국 대사관을 통한 정보 등을 종합할 때 북한 내에는 약 10만-15만의 정치범이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란코프, 1995, 297). 한편 민족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1997)에서 정치범 수를 20만 정도로 잡고 있다(130쪽).

한 상징적인 조치로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1997년 11월 8일 동경에 도착한 일본인처 고향방문단 1진 15명은 평균연령이 62.5세로 대부분 '당성'이 투철한 대상자 가운데 엄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2진도 곧 보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인처 귀국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권리'에 대한 위반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제기하기 보다 북한과의 단독 외교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빼는 입장이다. 구소련의 유대인 송환협상이 중대한 인권문제로 제기된 사안을 참조할 때 일본인처 귀국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아쉬운 실정이다.

기아문제

북한의 식량위기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 전세계 NGO가 북한 기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도 북한 식량지원 문제는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1995년 15만 톤의 양곡을 무상으로 원조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식량 및 구호품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민간단체들도 별도의 식량 및 구호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정부도 각각 별도의 통로로 북한에 상당량의 식량을 지원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정책의 구도아래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도 민간차원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단체들 사이에는 북한 기아문제는 북한의 체제적 모순에서 비롯된 '경제적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론 언론, 지원단체들은 이 문제를 '동포애', 혹은 '인도주의' 라는 명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또한 이 문제를 정치적 협상에 대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북한의 기아문제는 경제적 인권문제의 범주로 인식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 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는 분명한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 식량지원을 유도하려는 북한 당국은 이 문제를 정치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는 정부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경제적 인권문제라는 원칙 하에 식량지원 문제와 정치적 협상을 연계시키려는 북한 측의 의도는 거부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

비공식적인 통계로 1,000만에 달하는 남북 이산가족은 오늘날 분단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인권침해 피해자 가운데 하나이다. 적십자사를 통한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상호 연락문제 협상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89년 이후 97년 8월까지 제 3국을 통하여 가족상봉을 이룬 사례는 단지 128건에 지나지 않는다.¹⁹⁾ 특히 북한은 이 문제를 정치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다른 의제들과 함께 일괄타결한다는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산가족 재회 및 가족방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권현안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 당국자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대외적인 개방을 꺼리고 있는 북한당국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내외 NGO들도 이 문제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결의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중요한 인권문제로 지적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정치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인 노력이 보다 실효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문제를 국제화하

18) 중앙일보, 1997/11/11.

19) 통일원 국정감사자료에 의거, 중앙일보, 1997/10/01.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문제를 남북대화나 '적십자회담'이라는 제도적 구도 속에서 추구하고 있다.²⁰⁾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대화체널인 북한적십자사가 사실상 북한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해결의 적절한 절차가 될 수 없다.²¹⁾ 인권문제 해결은 결국 북한정부의 양보를 받아 낼 수 있는 국제적 압력을 동반할 때라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V.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최근 정부 일각에서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발맞추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개적인 접근자세를 취하고 있다.²²⁾ 1996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노명 당시 외무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북한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 측의 거부를 초래하고 남북협상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우려이다(권만학 1997, 54).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도 아직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²³⁾ 특히 지식인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시기상조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남한의 민주화로 인한 인권상황의 개선, 국제사회의 압력, 북한인권문제의 연계성 등 앞서 지적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인권정책의 수단들을 살펴보자.

정부차원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첫째 남북대화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한 대북 직접협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대북 식량지원, '판문점 면회소' 안등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직접협상 구도는 지금까지 북한 측의 '남한 인권문제' 역공과 거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²⁴⁾ 둘째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인권제도를 통한 문제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4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제도의 도입과 유엔 인권기구의 강화 등 이제 인권문제는 유엔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지구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인권레짐의 창설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인권규범과 제도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적인 접근방법은 유럽이나 미주 인권레짐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유엔 인권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인권레짐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대북 직접 제재방안이 있다. 이 방법은 과거 남아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의 '실종문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실행된 바가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엔등 국제기구와 관련 국가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 식량난 등 다른 심각한 문제들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을 추구하

20) 대한적십자사는 1997년 10월 26일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중앙일보, 1997/10/27.

21) 북한적십자사 이성호 위원장 대리는 김인서씨등 남한내 장기수 3인의 북한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7/9/28.

22) 1995년 5월 정부는 유관 부서 책임자들간에 북한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북한 인권대책 실무조정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에 [북한인권 정보자료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된 '북한인권백서'를 펴내고 있다.

23) 현대사회연구소가 1994년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귀하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개적인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응답은 20.7%에 머무른 반면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26.3%),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37.5%)는 응답이 보다 많이 나타난 바 있다. 현대사회연구소, 1994, 국민여론조사보고서, pp.111-2 참조.

24) 북한은 1983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초 국가인권보고서에서 남한내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1996년 유엔 총회 및 1997년 유엔 총회에서 우리측 대표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였을 때 북한은 남한내 장기수 및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북한 최초보고서(1983.10.24)" (법무부, 1991, 국제인권규약보고서 : 451-9).

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되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국내외 NGO를 통한 문제제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 방안은 현재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 NGO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방안은 우리 정부의 통제력 바깥의 문제이다. NGO의 성격상 우리 정부측의 자료나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 NGO와 협조체제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단체들은 주로 국제 NGO의 대북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체제 대립의 현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제약성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은 동시에 병행 추진될 수 있다. 여기서는 국제인권협약을 탈퇴한 북한에 대해서 행사될 수 있는 유엔 인권제도의 실행 절차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수단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유엔 인권제도는 국가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탄압 국가에 대한 도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등 국가들도 자국의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⁵⁾ 북한의 국제 인권규약 탈퇴는 유엔의 '조약에 의하지 않는 인권보호 제도과 절차'의 북한 인권문제 적용 가능성까지 막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유엔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엔 인권제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를 통한 방법. 총회에서 인권문제 제기는 전세계에 북한의 인권문제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기관인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표결을 통한 결의안 형태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또 지난 1996년과 1997년 우리나라 대표의 유엔총회 연설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북한 대표의 즉각적인 반박으로 나타나 자칫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결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법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둘째 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제기 방법.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 1235호(1967)에 의해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 통칭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러한 권한에 의해서 '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한 특별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소위원회'는 쿠메르 루즈군이 지배하던 당시의 캄보디아 사태,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리타니아 등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특별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년 간 조사한 바 있다. 또 인권소위원회 결의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이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인권보고관의 주요 임무는 해당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인 자료 뿐만아니라 NGO 및 인권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되는 증언 등 비공식적인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관의 활동은 당사국의 국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 집권세력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 NGO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NGO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 NGO들과 보조를 맞추어 활동할 수 있는 국내 NGO나 북한 NGO가 없다는 점이다. 또 국제엠네스티 등 NGO들은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남한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의 협조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금 우리나라 NGO들은 인권위원회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종군위안부문제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NGO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1503절차'를 활용하는 방법.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 1503호에 의해서 최초로 설치된

25) 25) 1992년-95년간 인권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자국 인권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측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Dicker(1995) 참조.

'1503절차'는 유엔이 수행하는 가장 광범위한 인권보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차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사실에 대한 개인의 진정을 허용하고 있다. 또 '특정한 규약에 가입 여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국가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다. 이 절차는 피해자 개인은 물론 '명백한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한 진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503 절차'는 인권이사회의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통보절차와 마찬가지로 인권 피해자 혹은 인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집단 또는 NGO에 의한 피해사실 통보로부터 시작된다. 통보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센터]에 접수되며 [센터]는 통보접수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인권피해자에게 최초의 통보접수 이후에는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이나 당사국의 답변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절차의 취지가 인권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당사국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03 절차'에 의해서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 사안은 공개되지 않지만 당사국의 이름은 인권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관련국가는 인권침해국이라는 국제적인 '수모'를 당하게 된다. '1503절차'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을 통해서 관련국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토마스 버겐탈 1992, 71-2). '1503절차'는 유엔이 마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권보호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비밀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치적 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Claude 1992, 220). 이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제시되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주민을 대신하여 인권피해에 대한 통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나 NGO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이 유엔의 제도에 접근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일본인처들의 일본 입국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가운데 일부가 집단적 차별이나 자유권 침해문제를 '1503절차'를 통해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일본정부나 시민단체, 법조계의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을 통한 탈북자 문제 처리. 이 방안은 제 3국을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UNHCR 지부를 설치하여 장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1951년 제정된 국제난민규약은 난민의 범주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은 당사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 처리에 대해서 선별적 구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남북간, 혹은 주변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보호조치가 없다면 사실상 '국적이 없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전혀 막을 방도가 없다.

다섯째 북한이 가입한 다른 유엔 인권보호 협약에 규정된 인권보호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특히 북한은 ILO와 국제아동인권보호협약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조약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북한의 국제규약 위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통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년노동이나 재소자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사항이다.

VI. 맺는 말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남북간 체제와 이념의 대결이라는 냉전적인 구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은 헤게모니 모델과 국제 도덕성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인권상황 및 인권에 대한 태도와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을 남북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인권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과 상당히 다르며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은 북한체제의 폐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북한 인권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연결고리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이 북한 자체의 변화 수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남한 등 동아시아 주변국가의 협조와 지역수준의 인권레짐 발전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인류공통의 도덕적 문제, 특히 북한당국의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과 그러한 위반에 대한 남한의 침묵은 남북통합의 진행과 함께 북한의 부채를 대신 짊어지게 될 남한의 도덕적 권위와 능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이해득실에 따라 "거론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 현실, 남북협상 및 4자 회담, 남한내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과 서로 연관된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우리 사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사회 각 부문의 노력은 '인권정책'이라는 범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통일원,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내 유관 부서와 시민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하는 인권정책 심의 및 추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대북 인권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인권상황 개선 방안들을 연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 가운데 유엔의 인권제도와 실행조치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엔 인권제도가 지니고 있는 국가중심주의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유엔 인권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동북아 지역인권레짐의 창설과 NGO활동이다.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NGO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는 국제 인권레짐의 개입이 확대될 것을 예측케 해준다. 유엔의 새로운 위상과 NGO로 대표되는 세계여론의 압력이 북한의 고립적인 인권정책을 타파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남아공화국, 아르헨티나, 구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은 인권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대안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는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통일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21세기 내에 실현될 것이 분명한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인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은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만학. 1997. "남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백학순 편.
『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세종연구소.